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의 시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외에 교육·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중앙행정기관(단,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제3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

호에 따른 학교 : 시·도교육청

-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중앙행정기관
- 5. 법 제2조제1호바목·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시설 : 개별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 등의 지도·감독 기관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1월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기준·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실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지체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기준·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실행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

④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의 실행결과를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실행계획의 확인·점검 등)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결과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행계획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미리 확인·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를 요구한 교육부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0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4 -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협의체
 4. 그 밖에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또는 전문기관
- 제9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 5 -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정책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 6 -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실습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시설 기준
2.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3.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면적이 확보되고, 다양한 학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등의 건축 기준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신축·증축·개축·이전 등의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내용·절차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이 법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소관 교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도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 평가·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내용 및 점검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책위원회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을 말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별로 구분하여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한 점검 항목별로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점검 결과,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 -

-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⑥ 교육시설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시설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
 2.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3. 제1호·제2호 외의 교육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폐교·이전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시설안전인증 기준 및 등급·유효기간) ① 안전인증 기준은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별로 구분하여 마련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② 안전인증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정한다.

③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 여부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단위로 실시하되,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시설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등의 단위로 안전인증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축, 증축 등 건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안전인증에 관

- 11 -

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⑦ 인증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정 기준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시설안전인증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 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작성)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 12 -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안전점검등의 실시) ① 안전점검등의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준공연도,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등급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교육시설로서, 사용되지 않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점검등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교육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학교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제22조(안전점검등의 결과보고)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출한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해 부실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실 등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결과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제23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등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
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
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
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
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 제24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교육시설
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
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 계획을 수립
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 계획에 따라 결함

- 15 -

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 ③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내용을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
정보망에 입력하고,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
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점검등지침에서 정한다.
- 제25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
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감독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
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를 말한다.

- 16 -

제26조(안전성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에 따른 건축승인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려는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내용·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조 및 지반의 안전성, 통학로 안전 확보의 적정성 등 안전성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 등의 사업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안전펜스 설치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 건축 또는 건설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보완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보완조치 계획서 및 조치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 17 -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안전성평가 결과 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제28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관 지정) 교육부장관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 결과

- 18 -

2.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3.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4.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및 정보공개 등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0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절차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시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고의 원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 19 -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31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제32조(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업무

- 20 -

4.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전문기관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정된 업무와 관련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의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예산·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춘 것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

나.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춘 것

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를 보유할 것

3. 그 밖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전문기관이 자진 철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상반기의 경우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⑦ 전문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5조(안전원의 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려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안전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간까지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 23 -

6.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업무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 업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기준·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24 -

제3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	1,000	1,500	2,000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00	1,500	2,000	
나.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1호	500	750	1,0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50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50	1,000
마.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1호		250	350
1)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제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바.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2호		500	
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법 제54조제3항제3호			

으로 보고한 자			250	350	500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50	350	500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4호	250	350	500	
자.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5호		50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말한다.

제3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급·유효기간) ① 영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심사분야”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분야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안전인증을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안전인증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등)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인증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인증 여부 및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른 등급·유효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인증 평가에 참여한 자는 안전인증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재인증 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건축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한 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제6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영 제20조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육안감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결함부위의 확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결함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하중내하력(荷重耐荷力)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관리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등제에 관한 사항

제7조(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제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
 2.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3.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4.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 ③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31 -

④ 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개축 등 조치방식, 재정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평가 절차 등) ① 영 제26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학생 안전 확보 방안
2. 학교·학생 불편 최소화 방안
3. 그 밖에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참여 절차 등)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적정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를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 관계 공무원 및 시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 32 -

③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립된 교육시설에 대해 사용자 만족도, 효과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용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4. 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5.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③ 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인증 심사분야(제3조제1항 관련)

인증 분야	주요 내용
시설안전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내재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평가
실내환경안전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환경 조성, 건축재료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
외부환경안전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 교통 안전, 감시·보안 체계 등 외부 환경 등에 대해 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고유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당자	부서	직위
	Tel	Fax	E-mail
신청대상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준공(예정)일	
	연면적	용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자체 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신청한 금액
------	-----------------------------------------------------------------------------------------------------------------------------------------	-------------------------------

처리절차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안전조치 명령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이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
가. 시설명·지역명
나. 점검등의 개요
다. 점검등의 결과
2.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
3. 안전조치 이행기한
4. 안전조치 이행사항 및 방법
5.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안전조치 결과 보고서 첨부)

발신명의 직인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관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안전조치 결과 보고서

안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안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지역명 또는 위치		
안전조치 이행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

보완조치 이행의무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지역명 또는 위치		
보완조치 이행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보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교육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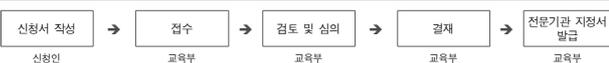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4. 전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5. 전문기관의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수수료 없음
교육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교육부장관 확인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전문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유효기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_____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과태료처분 통지서

제 호

과태료 납부대상자 인적사항	업체[기관] 명	
	법인[고유]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위반사항		
관련근거		
과태료 금액		

- 귀하께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산정되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첨부서류 |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태료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주 소 부 성 자 명	
세입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 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
금 액	금 원정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위의 금액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 입 일부인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지점 <input type="checkbox"/> 기 관 장

90mm×160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영수필통지서(1)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주 소 부 성 자 명	
세입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 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
금 액	금 원정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입 일부인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지점 <input type="checkbox"/> 기 관 장 징수관 귀하

90mm×160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주 소 부 성 자 명	
세입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 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
금 액	금 원정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입 일부인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지점 <input type="checkbox"/> 기 관 장

90mm×160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납 주 소 부 성 자 명	
세입과 목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
위반사 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00조
금 액	금 원정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입 일부인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지점 <input type="checkbox"/>

90mm×160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
360mm×160mm
[백상지 80g/m²(재활용품)]